

수자원의 조사·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형동의원 대표발의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홍수·가뭄 등 물재해 대응에 필요한 관련 기술·정책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역 물재해지원센터를 설립·운영할 수 있도록 함(안 제26조의2 신설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.

(전문위원 이 세 진)